

Tax Newsletter updates tax policies on Funds for real estate investment, Personal Income Tax and Business Licenses

2017년 2월

부동산투자자금 활동에 대한 조세, 개인들과 영업협력, 중개활동의 세금과 베트남에 FDI기업들의 물건 매매활동과 상품구,판매에 직 관련된 각활동의 영업허가에 대한 업데이트.



본 뉴스중에 Grant Thornton Việt Nam(주)는 조세와 법률정책을 고객님의 참고로서 다음 같이 업데이트를 드린다:

Content

Page

국세청은 부동산 투자 자금에 관련된 조세정책에 대한 안내.

3

개인과 중개활동과 영업협력활동에 대한 개인소득세.

4

상품매매 활동영업과 베트남에 FDI기업들의 물건구, 판매에 직접 관련된 각활동의 영업 허가서.

4



1.국세청은 부동산 투자 자금에 관한 조세정책에 대한 안내.

최근에 국세청은 부동산 투자자금의 각 활동에 대한 주목에 필요한 일부정책을 안내해준 공포를 다음 같다:

- 세CODE등록: 부동산 투자자금은 직속부서이 기때문에 세CODE를 13개숫자로 받게된다.
- 부동산 투자자금에 부동산으로 자본금불입할때의 투자자의 세금 의무:
 - 현재, 회사창업하기 위한 자산으로 자본금불입 혹은 각 투자자금에 부동산으로 불입하는 일은 현행법규처럼 등록수수료를 부담되지 않는다.
 - 투자자금에 부동산으로 불입하는조직및 개인들은 VAT영수증발급, 신고,납세를 하지않다.
 - 투자자는 투자자금에 부동산으로 불입하는 경우에 조세의무를 다음 같이 진행된다:
 - 투자법,기업법에따라 활동하는 베트남에 영업조직의 투자자인경우: 부동산양도 활동 에서 나온 소득에 대한 납세를20%의 세율로 적용한다. 그외에 투자 자는 장부상 남은 가치보다 더 높게 평가된 불입 부동산인경우에 소득증가기록과 법인 소득 납세의무도 있다.
 - 개인으로 된 투자자인 경우: 자본금 불입할때의 부동산양도에서 소득에 대한 납세를 양도가치상에 2%세율로 한다.
- 부동산을 구매,양도, 임대로 할때에 자금의 조세의무:

- 자금관리회사는 자금을 대신으로 자기의 세code로 투자자금에 판매자가 제출해준 자산 구매영수증에 근거된 각 자산의 구입VAT신고와 공제를 해준다. 부동산구매금액, 수수료, 비용들은 부동산 투자자금의 계정에서 직접 결재된다.
- 부동산 자금은 자기의 부동산을 임대해준 활동이 있을때 자금 관리회사가 영수증발급을 책임주거나 고객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준 자금 관리회사에 위임해준다. 영수증상에 판매 소의 이름을 자금관리회사이름으로 쓰고 세code를 부동산자금의 13개숫자의 세 code로 쓴다.
- 부동산 양도 할때 자금관리 회사는 투자자금을 대신해서 고객에게 영수증을 제출해주고 VAT및 법인소득세를 계산신고한다. 자금관리 회사의 본사주소와 중앙소속된 시,성에 다른 주소에 있는 부동산들의경우에 자금관리 회사가 부동산이 있는 조세기관에 부동산 자금에 대한 왕래세code를 등록해주어서 세금 계산, 신고를 진행한다.



2. 개인과 중개활동과 영업협력활동에 대한 개인소득세.

재정부는 개인과 중개활동과 영업협력활동에 대한 조세정책을 발급, 안내한다.

- ▶ **중개활동에 대하여**: 회사는 개인과 계약해서 상품판매 중개활동을 진행해서 개인이 중개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 개인소득을 봉급 혹은 수수료로 계산된다. 회사는 개인에게 지급해주기 전에 소득상에 10%기준으로 개인소득세의 공제로 만약 소득지급을 2백만 동/회 이상이면 한다.
- ▶ **영업협력활동에 대하여**: 회사는 영업하지 않는 개인과 영업협력계약을 해서 고객에게 같이 서비스를 제공해준 경우, 영업협력계약은 매출금을 나눠준 형식으로 개인이 계약금의 40%를 받다. 회사는 개인에게 40%의 매출금을 나눠준 때엔:
 - 회사는 개인에게 개인소득세계산, 신고, 납세 의무가 있거나 개인이 계약에서 나온 소득에 대한 신고 납세를 한다.
 - 회사는 영업협력계약에 대한 증빙을 사용하고 생산영업에 관련된 그런 항목의 법인 소득세를 결정할때 공제항목으로 계산된다

3. 상품매매 활동영업과 베트남에 FDI기업들의 물건 구, 판매에 직접 관련된 각 활동의 영업 허가서

상공부는 2017년에 상공부의 국가관리분야중에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의 승인, 발급을 금방 한다. 그중엔 주목된 점으로 상공부는 정부 의령서 제 23/2007/NĐ-CP호의 변경을 해서 상품 매매활동 허가 와 의령 제 23/2007/NĐ-CP호에 규정된 베트남에 FDI회사들의 상품 구, 판매에 직 관련된 각 활동 (영업허가서) 를 다음 내용들의 개선으로 한다:

- I. FDI회사는 수입권, 수출권을 신고하는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된다.
- II. FDI기업의 생산용 원자재인 각 물건들의 도매권을 넓혀주고 도매판매권은 상공부의 발급 리스트에 속한 일부 사업분야에 제한된다

우리 Grant Thornton는 고객님들에게 의령서 제 23/2007/NĐ-CP호의 변경보충이 있을 때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현행규정에 따라 FDI회사도 아직 베트남에 상품매매 활동과 상품 매매에 직 관련된 활동을 진행하기 전에 수입, 수출, 분배 권한을 등록해 야한다.

고객님들은 베트남에 FDI회사의 상품구, 판매 활동의 영업허가서와 상품매매에 직 관련된 활동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받으려면 우리 Grant Thornton의 전문가들과 같이 연락해주시면 된다.



Contact

본 소식통은 오직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 한다.

고객님은 본소식통의 정보를 사용하거나 더이상 Grant Thornton Việt Nam(주)의 협조를 받으려시면 우리 전문가하고 서심없이 연락해주시기를 바란다.

고객님은 상기 소식통을

DOWNLOAD 을 하고 싶면 우리의 다음 **web**에 들어오셔서 검색해주시면 된다:

www.grantthornton.com.vn

Head Office in Hanoi

18th Floor, Hoa Binh International Office Building
106 Hoang Quoc Viet Street, Cau Giay District, Ha Noi, Vietnam
Phone: + 84 4 3850 1686
F: +84 4 3850 1688

Ho Chi Minh City Office

14th Floor, Pearl Plaza
561A Dien Bien Phu Street, Binh Thanh District, Ho Chi Minh, Vietnam
Phone:+ 84 8 3910 9100
F: + 84 8 3914 9101



Hoang Khoi
Tax Partner
P +84 4 3850 1618
E Khoi.Hoang@vn.gt.com



Kaoru Okata
Japanese Desk - Director
P+84 4 3850 1680
E Kaoru.Okata@vn.gt.com



Nguyen Hung Du
Tax Partner
P +84 8 3910 9231
E HungDu.Nguyen@vn.gt.com



Valerie – Teo Liang Tuan
Tax Director
P +84 8 3910 9235
E Valerie.Teo@vn.gt.com



Tran Nguyen Mong Van
Tax Director
P +84 8 3910 9233
E MongVan.Tran@vn.gt.com



Nguyen Dinh Du
Tax Partner
P +84 4 3850 1620
E Du.Nguyen@vn.gt.com



Pham Ngoc Long
Tax Director
P+84 4 3850 1684
E Long.Pham@vn.gt.com



Tran Hong My
Tax Director
P+84 8 3910 9275
E HMy.Tran@vn.gt.com



Tomohiro Norioka
Japanese Desk – Director
P +84 8 3910 9205
E Tomohiro.Norioka@vn.gt.com